#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의안 번호 132

제출연월일: 2007. 05. 04.

제 출 자:대전광역시교육감

## □ 제안이유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확립 및 깨끗한 공무원상 정립을 통해 신뢰받는 대전교육 행정을 구현하고자 교육부조리를 신고하는 내부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². 주요내용

#### 가. 부조리 행위 범위 규정(안 제2조)

-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재산이나 물품 또는 기타 재정상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 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나. 보상금 지급대상(안 제3조)

부조리 행위 신고자 중 공익신고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

# 다. 보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4조)

- 1)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공익신고 보상심사위원회를 둠
- 2) 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
- 3) 위원회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액 지급 대상·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이 심사요청하는 사항 을 심의함

#### 라. 신고기한(안 제5조)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자는 당해 부조리를 행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일부터 1년 이내에, 부조리 행위를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마. 신고방법(안 제6조)

공익신고는 신고자 및 부조리 행위 공무원의 인적사항과 행위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 긴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우편·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고, 전화 신고시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바. 신고자의 보호(안 제7조)

부조리를 신고받은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함

#### 사. 보상금 지급(안 제8조 및 별표)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하며, 금품·향응 신고의 경우 수수액 (향응액)의 10배 이내, 알선·청탁행위 신고시 1,000만원 이하로 함

### 아. 보상금 지급제외(안 제9조)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 2) 감사원·사법기관 또는 교육청에서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3) 기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 자. 보상금 환수(안 제10조)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임이 인지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차. 징계 등(안 제11조)

- 1)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2) 신고자가 허위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카. 적용례(부칙 제**2**항)

제5조 (신고기한)의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발생한 부조리 행위부터 적용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법」제36조 내지 제39조,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6조
- 나. 예산조치: 2001년도 본예산에 보상금 1,500천원 반영됨
- 다. 관련 부서간 합의여부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 2001. 1. 4.~1. 24.

#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대전교육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부조리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관 재산이나 물품 또는 기타 재정상에 손실을 끼친 행위
-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②"내부공익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라 함은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무원을 말한다.
- ③ "보상금"이라 함은 신고자중 신고내용이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기여하여 깨끗한 대전교육 풍토를 조성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보상금은 부조리 행위 신고자중 공익신고 보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 (위원회) ①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 ②위원회는 5인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액 지급 대상·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2. 기타 교육감이 심사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신고기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자는 당해 부조리를 행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일부터 1년 이내에, 부조리 행위를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방법) 공익 신고는 신고자 및 부조리 행위 공무원의 인적사항과 행위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우편·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고, 전화 신고시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자의 보호) 부조리를 신고받은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 2. 감사원·사법기관 또는 교육감이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3.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제10조 (보상금의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인지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 ①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신고자가 허위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발생한 부조리 행위부터 적용하다.

## [별표]

##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제8조 관련)

번 호	유 형 (지급 대상)	지급 기준
1	조례 제²조제! 항제! 호 관련	· 금품 수수액의 IO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IO배 이내
5	조례 제²조제' 항제²호 관련	<ul> <li>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 이내, 단,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10%이내 추가 지급</li> <li>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2%이내, 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20%이내 추가 지급</li> </ul>
3	조례 제³조제I 항제³호 관련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 금액의 10배 이내 · 알선·청탁 행위신고 : 1,000만원 이하

※ 비고 :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